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1
----------	------

발의연월일 : 2021. 11. 22.

발의의원 : 김은영 의원, 서도원 의원
신동윤 의원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달성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안전교육, 주차시설 설치(안 제4조~제6조)
- 다.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7조~제9조)
- 라.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예산 지원 등(안 제10조~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도로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도로, 교통안전 시설, 거치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5.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제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그 사업 시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시설 설치) ① 군수는 공원, 관공서, 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③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소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장비(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